|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기술출자 관련 소득세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6]101호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국가대중창업 및 만중혁신전략 실행을 지원하고, 중국경제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무원 비준을 거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기술출자 관련 소득세 정책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1. 조건에 부합하는 비상장회사 주식옵션, 주주권옵션, 제한성 주식과 주주권 인센티브에 대한 이연납세정책 실행1.1 비상장회사가 본 회사 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옵션, 주주권옵션, 제한성 주식과 주주권 인센티브가 규정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등록을 거쳐 이연납세정책을 실행할 수 있으며, 즉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취득 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주주권 양도 시까지 이연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주주권 양도 시, 주주권 양도수입에서 주주권 취득원가 및 합리적 세비를 공제한 후 차액에 따라 “재산양도소득”항목에 적용시켜 20%의 세율에 맞춰 개인소득세를 계산 납부한다.주주권 양도 시, 주식(주주권)옵션 취득원가는 행사가격에 따라 확정하고, 제한성 주식취득원가는 실제출자액에 따라 확정하며 주주권 인센티브 취득원가는 ‘0’이다. 1.2 이연납세정책을 누리는 비상장회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주식옵션, 주주권옵션, 제한성 주식과 주주권 인센티브 포함, 하동)은 반드시 이하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1.2.1 경내 거주자 기업에 해당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획1.2.2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획은 회사 동사회, 주주(총)회 심의통과를 거친다. 주주(총)회가 설치되지 않은 국유단위(공기업)는 상급 주관부처의 심사비준을 거친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획에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목적, 대상, 타겟, 유효기간, 각 유형별 가격의 확정방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대상이 가지는 권익의 조건, 절차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2.3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목적물은 경내 거주자 기업의 본 회사 주주권이어야 한다. 주주권 인센티브의 목적물은 기타 경내 거주자 기업에 기술성과를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주권으로 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목적물의 주식(주주권)은 증자, 대주주 직접 양도 및 법률법규에 허가된 기타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대상에게 부여한 주식(주주권)을 포함한다. 1.2.4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대상은 회사 동사회 또는 주주(총)회로 결정된 기술책임자와 고급관리직원이어야 하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대상 인원수 누계는 본 회사 최근 6개월 재직 직원 평균 인원 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1.2.5 주식(주주권)옵션은 부여일로부터 만 3년을 보유하여야 하고, 행사일로부터 만 1년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한성 주식은 부여일로부터 만 3년을 보유하여야 하고, 해지 후 만 1년을 보유하여야 한다. 주주권 인센티브는 인센티브 획득일로부터 만 3년을 보유하여야 한다. 상술한 기간조건은 반드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획 중 명시되어야 한다. 1.2.6 주식(주주권)옵션은 부여일로부터 행사일까지의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1.2.7 주주권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회사 및 그 인센티브 주주권 대상 회사가 속한 업종은 <주주권 인센티브 세수우대정책 제한성 업종목록>범위 (첨부 참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회사가 속한 업종은 회사의 직년 납세연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에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확정한다. 1.3 본 통지에서 일컫는 주식(주주권)옵션은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대상에게 일정 기한 내 사전 약정한 가격으로 본 회사 주식(주주권)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 통지에서 일컫는 제한성 주식은 회사가 미리 확정된 조건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대상에게 일정 수량의 본 회사 주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가리키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대상은 근속년수 또는 실적목표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획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해당 주주권을 처리할 수 있다. 본 통지에서 일컫는 주주권 인센티브는 기업이 무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대상에게 일정금액의 주주권 또는 일정수량의 주식을 부여하는 것을 가리킨다.1.4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획에 명시된 내용이 제1조 제2관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않거나 또는 이연납세기간에 회사상황에 변동이 생겨 제1조 제2관 제4~6항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연납세우대를 누릴 수 없고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 납부하여야 한다.2. 상장회사 주식옵션, 제한성 주식과 주주권 인센티브에 대한 적절한 납세기한 연장 2.1 상장회사가 개인에게 부여한 주식옵션, 제한성 주식과 주주권 인센티브는 주관세무기관에 등록을 거쳐 개인이 주식옵션 행사 및 제한성 주식 해지 또는 주주권 인센티브 취득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상장회사 고급관리직원 주식옵션소득의 개인소득세 납부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9]40호)는 본 통지 실행일로부터 폐지한다.2.2 상장회사 주식옵션, 제한성 주식 납부세액의 계산은 계속하여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 주식옵션소득의 개인소득세 징수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5]35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주식증가권소득과 제한성 주식소득의 개인소득세 징수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9] 5호), <국가세무총국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관련 개인소득세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함[2009]461호)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주주권 인센티브 납부세액의 계산은 상술한 규정과 비교 대조하여 집행한다. 3. 기술성과 투자출자에 대한 선택적 세수우대정책 실시3.1 기업 또는 개인이 경내 거주자 기업에 기술성과를 투자출자할 경우 피투자기업이 지급한 대가전액이 주식(주주권)일 경우, 기업 또는 개인은 계속 현행 유관세수정책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이연납세우대정책 또한 선택 적용할 수 있다. 기술성과를 투자출자하는 이연납세정책을 선택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등록을 거쳐 투자출자 당기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주주권 양도 시까지 이연을 승낙하고, 주주권 양도수입에서 기술성과 원래 가치와 합리적 세비를 공제한 후의 차액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 납부한다. 3.2 기업 또는 개인이 상술한 어떤 한 가지 정책을 선택할 경우, 피투자기업은 기술성과에 따른 투자출자 시의 평가가치를 장부에 기록하고, 또한 기업소득세 전 상각 공제함을 승낙한다. 3.3 기술성과는 특허기술(국방특허 포함),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집적회로도설계 전유권, 식물신품종권, 생물의약신품종 및 과기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확정한 기타기술성과를 가리킨다. 3.4 기술성과를 투자출자하는 것은 납세자가 기술성과소유권을 피투자기업에 양도하고 해당기업 주식(주주권)을 취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4. 관련정책4.1 개인이 재직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공정시장가격보다 낮게 주식(주주권)을 획득할 경우 모두 이연납세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주식(주주권)을 획득할 시, 실제출자액이 공정시장가격보다 낮은 차액에 대해서는 “임금, 급여소득” 항목에 따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 주식옵션소득의 개인소득세 징수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 [2005] 35호) 유관규정을 참고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납부한다. 4.2 개인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및 기술성과를 투자출자하여 주주권을 획득한 후 비상장회사가 경내 상장하여 이연납세의 주주권을 처리할 시, 현행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 관련 세금징수규정에 따라 집행한다.4.3 개인이 주주권을 양도할 경우 이연납세우대정책을 누리는 지분권 우선양도로 간주한다. 이연납세의 주주권원가는 가중평균법에 따라 계산하며 기타방식으로 취득한 주주권 원가와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는다.4.4 이연납세를 보유한 주주권 기간에 해당 주주권으로 인해 발생한 무상증자수입 및 해당 이연납세의 주주권이 비화폐성 자산으로 재투자를 진행할 경우 당기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4.5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에 등록된 회사는 본 통지 제1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본 통지와 제2조에 규정된 상장회사는 그 주식이 상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5. 맞춤관리조치5.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또는 기술성과를 투자출자하는 것에 대해 이연납세정책을 선택 적용할 경우 기업은 규정된 기간 내 주관세무기관에서 등록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등록수속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본 통지에 규정된 이연납세우대정책을 누릴 수 없다. 5.2 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를 실시하거나 또는 개인이 기술성과로써 투자출자 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실시하거나 또는 기술성과를 획득한 기업이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이연납세기간에 원천징수의무자는 매 납세연도 종료 후 주관세무기관에 이연납세 관련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5.3 공상부처는 기업의 주주권변경정보를 즉시 세무부처와 공유하여야 하며, 잠시 인터넷 연결이 불가 할 때 즉시 정보조건을 공유할 경우 공상부처는 주주권변경등기 3 영업일 내 정보를 세무부처와 공유하여야 한다.6. 본 통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관촌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2016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발생하였고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주주권 인센티브 사항은 본 통지에 규정된 관련조건에 부합할 경우 본 통지 유관정책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재정부국가세무총국2016년 9월 20일 첨부: 주주권 인센티브 세수우대정책 제한성 업종목록주주권 인센티브 세수우대정책 제한성 업종목록

|  |  |
| --- | --- |
| 분류코드 | 유형명칭 |
| A (농, 임, 목, 어업) | (1) 03목축업 (과학연구 및 종자번식성격항목 제외)(2) 04어업 (과학연구 및 종자번식성격항목 제외) |
| B (채광업) | (3) 채광업 (제11류 채광보조활동 제외) |
| C (제조업) | (4) 16담배제조업(5) 17방직업 (제178류 비가정용방직완제품 제조 제외) (6) 19피혁, 모피, 우모 및 그 제품과 신발제조업(7) 20목재가공과 목, 죽, 등나무, 종려나무, 초 제품업(8) 22제지와 종이제품업 (제223류 종이제품 제조 제외)(9) 31흑색금속제련과압연가공업 (제314류 강압연가공 제외) |
| F (도〮소매업) | (10) 도〮소매업 |
| G (교통운수, 창고저장과 우정업) | (11) 교통운수, 창고저장과 우정업 |
| H (숙박과 요식업) | (12) 숙박과 요식업 |
| J (금융업) | (13) 66화폐금융서비스(14) 68보험업 |
| K (부동산업) | (15) 부동산업 |
| L (임대와 상무서비스업) | (16) 임대와 상무서비스업  |
| O (주민서비스, 수리와 기타서비스업) | (17) 79주민서비스업 |
| Q (위생과 사회봉사) | (18) 84사회봉사 |
| R (문화, 체육과 오락업) | (19) 88체육(20) 89오락업 |
| S (공공관리, 사회보장과 사회조직) | (21) 공공관리, 사회보장과 사회조직 (제9421류 전문성단체와 9422류 업종성단체 제외) |
| T (국제조직) | (22) 국제조직  |

설명: 이상목록은 <국민경제업종분류> (GB/T 4754-2011)에 따라 작성됨. |  | **关于完善股权激励和技术入股有关所得税政策的通知**财税[2016]101号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为支持国家大众创业、万众创新战略的实施，促进我国经济结构转型升级，经国务院批准，现就完善股权激励和技术入股有关所得税政策通知如下：　　一、对符合条件的非上市公司股票期权、股权期权、限制性股票和股权奖励实行递延纳税政策 　　（一）非上市公司授予本公司员工的股票期权、股权期权、限制性股票和股权奖励，符合规定条件的，经向主管税务机关备案，可实行递延纳税政策，即员工在取得股权激励时可暂不纳税，递延至转让该股权时纳税；股权转让时，按照股权转让收入减除股权取得成本以及合理税费后的差额，适用“财产转让所得”项目，按照20%的税率计算缴纳个人所得税。　　股权转让时，股票（权）期权取得成本按行权价确定，限制性股票取得成本按实际出资额确定，股权奖励取得成本为零。　　（二）享受递延纳税政策的非上市公司股权激励（包括股票期权、股权期权、限制性股票和股权奖励，下同）须同时满足以下条件：　　1.属于境内居民企业的股权激励计划。2.股权激励计划经公司董事会、股东（大）会审议通过。未设股东（大）会的国有单位，经上级主管部门审核批准。股权激励计划应列明激励目的、对象、标的、有效期、各类价格的确定方法、激励对象获取权益的条件、程序等。3.激励标的应为境内居民企业的本公司股权。股权奖励的标的可以是技术成果投资入股到其他境内居民企业所取得的股权。激励标的股票（权）包括通过增发、大股东直接让渡以及法律法规允许的其他合理方式授予激励对象的股票（权）。　　4.激励对象应为公司董事会或股东（大）会决定的技术骨干和高级管理人员，激励对象人数累计不得超过本公司最近6个月在职职工平均人数的30%。　　5.股票（权）期权自授予日起应持有满3年，且自行权日起持有满1年；限制性股票自授予日起应持有满3年，且解禁后持有满1年；股权奖励自获得奖励之日起应持有满3年。上述时间条件须在股权激励计划中列明。　　6.股票（权）期权自授予日至行权日的时间不得超过10年。　　7.实施股权奖励的公司及其奖励股权标的公司所属行业均不属于《股权奖励税收优惠政策限制性行业目录》范围（见附件）。公司所属行业按公司上一纳税年度主营业务收入占比最高的行业确定。（三）本通知所称股票（权）期权是指公司给予激励对象在一定期限内以事先约定的价格购买本公司股票（权）的权利；所称限制性股票是指公司按照预先确定的条件授予激励对象一定数量的本公司股权，激励对象只有工作年限或业绩目标符合股权激励计划规定条件的才可以处置该股权；所称股权奖励是指企业无偿授予激励对象一定份额的股权或一定数量的股份。　　（四）股权激励计划所列内容不同时满足第一条第（二）款规定的全部条件，或递延纳税期间公司情况发生变化，不再符合第一条第（二）款第4至6项条件的，不得享受递延纳税优惠，应按规定计算缴纳个人所得税。　　二、对上市公司股票期权、限制性股票和股权奖励适当延长纳税期限 　　（一）上市公司授予个人的股票期权、限制性股票和股权奖励，经向主管税务机关备案，个人可自股票期权行权、限制性股票解禁或取得股权奖励之日起，在不超过12个月的期限内缴纳个人所得税。《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上市公司高管人员股票期权所得缴纳个人所得税有关问题的通知》（财税〔2009〕40号）自本通知施行之日起废止。　　（二）上市公司股票期权、限制性股票应纳税款的计算，继续按照《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股票期权所得征收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财税〔2005〕35号）、《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股票增值权所得和限制性股票所得征收个人所得税有关问题的通知》（财税〔2009〕5号）、《国家税务总局关于股权激励有关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国税函〔2009〕461号）等相关规定执行。股权奖励应纳税款的计算比照上述规定执行。　　三、对技术成果投资入股实施选择性税收优惠政策 　　（一）企业或个人以技术成果投资入股到境内居民企业，被投资企业支付的对价全部为股票（权）的，企业或个人可选择继续按现行有关税收政策执行，也可选择适用递延纳税优惠政策。　　选择技术成果投资入股递延纳税政策的，经向主管税务机关备案，投资入股当期可暂不纳税，允许递延至转让股权时，按股权转让收入减去技术成果原值和合理税费后的差额计算缴纳所得税。　　（二）企业或个人选择适用上述任一项政策，均允许被投资企业按技术成果投资入股时的评估值入账并在企业所得税前摊销扣除。　　（三）技术成果是指专利技术（含国防专利）、计算机软件著作权、集成电路布图设计专有权、植物新品种权、生物医药新品种，以及科技部、财政部、国家税务总局确定的其他技术成果。　　（四）技术成果投资入股，是指纳税人将技术成果所有权让渡给被投资企业、取得该企业股票（权）的行为。　　四、相关政策 　　（一）个人从任职受雇企业以低于公平市场价格取得股票（权）的，凡不符合递延纳税条件，应在获得股票（权）时，对实际出资额低于公平市场价格的差额，按照“工资、薪金所得”项目，参照《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股票期权所得征收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财税〔2005〕35号）有关规定计算缴纳个人所得税。　　（二）个人因股权激励、技术成果投资入股取得股权后，非上市公司在境内上市的，处置递延纳税的股权时，按照现行限售股有关征税规定执行。　　（三）个人转让股权时，视同享受递延纳税优惠政策的股权优先转让。递延纳税的股权成本按照加权平均法计算，不与其他方式取得的股权成本合并计算。　　（四）持有递延纳税的股权期间，因该股权产生的转增股本收入，以及以该递延纳税的股权再进行非货币性资产投资的，应在当期缴纳税款。　　（五）全国中小企业股份转让系统挂牌公司按照本通知第一条规定执行。　　适用本通知第二条规定的上市公司是指其股票在上海证券交易所、深圳证券交易所上市交易的股份有限公司。　　五、配套管理措施 　　（一）对股权激励或技术成果投资入股选择适用递延纳税政策的，企业应在规定期限内到主管税务机关办理备案手续。未办理备案手续的，不得享受本通知规定的递延纳税优惠政策。（二）企业实施股权激励或个人以技术成果投资入股，以实施股权激励或取得技术成果的企业为个人所得税扣缴义务人。递延纳税期间，扣缴义务人应在每个纳税年度终了后向主管税务机关报告递延纳税有关情况。　　（三）工商部门应将企业股权变更信息及时与税务部门共享，暂不具备联网实时共享信息条件的，工商部门应在股权变更登记3个工作日内将信息与税务部门共享。　　六、本通知自2016年9月1日起施行。 　　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2016年1月1日至8月31日之间发生的尚未纳税的股权奖励事项，符合本通知规定的相关条件的，可按本通知有关政策执行。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2016年9月20日 附件： 股权奖励税收优惠政策限制性行业目录  股权奖励税收优惠政策限制性行业目录

|  |  |
| --- | --- |
| 门类代码 | 类别名称 |
| A（农、林、牧、渔业） | (1) 03畜牧业（科学研究、籽种繁育性质项目除外） (2) 04渔业（科学研究、籽种繁育性质项目除外）  |
| B（采矿业） | (3) 采矿业（除第11类开采辅助活动）  |
| C（制造业） | (4) 16烟草制品业 (5) 17纺织业（除第178类非家用纺织制成品制造） (6) 19皮革、毛皮、羽毛及其制品和制鞋业 (7) 20木材加工和木、竹、藤、棕、草制品业 (8) 22造纸和纸制品业（除第223类纸制品制造） (9) 31黑色金属冶炼和压延加工业（除第314类钢压延加工）  |
| F（批发和零售业） | (10) 批发和零售业  |
| G（交通运输、仓储和邮政业） | (11) 交通运输、仓储和邮政业  |
| H（住宿和餐饮业） | (12) 住宿和餐饮业  |
| J（金融业） | (13) 66货币金融服务 (14) 68保险业  |
| K（房地产业） | (15) 房地产业  |
| L（租赁和商务服务业） | (16) 租赁和商务服务业  |
| O（居民服务、修理和其他服务业） | (17) 79居民服务业  |
| Q（卫生和社会工作） | (18) 84社会工作  |
| R（文化、体育和娱乐业） | (19) 88体育 (20) 89娱乐业  |
| S（公共管理、社会保障和社会组织） | (21) 公共管理、社会保障和社会组织（除第9421类专业性团体和9422类行业性团体）  |
| T（国际组织） | (22) 国际组织  |

　　说明：以上目录按照《国民经济行业分类》（GB/T 4754-2011）编制。　　 　　 |